

2022년도 3/4분기

---

#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2. 11.

감사위원회

# 1. 개요

## 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,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## 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2. 7. 1. ~ 9. 30.(2022년 3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

## 접수결과

- 2022년 3분기 총 72건 접수

[표 1] 2022년 3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7월	8월	9월	
공익제보 지원센터	공직자비리신고	42	18	5	19
	공익신고	22	13	3	6
	부정청탁	0	-	-	-
	갑질피해신고	1	1	-	-
국민권익 위원회	국민신문고	7	4	3	-
합	계	72	36	11	25

## 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### 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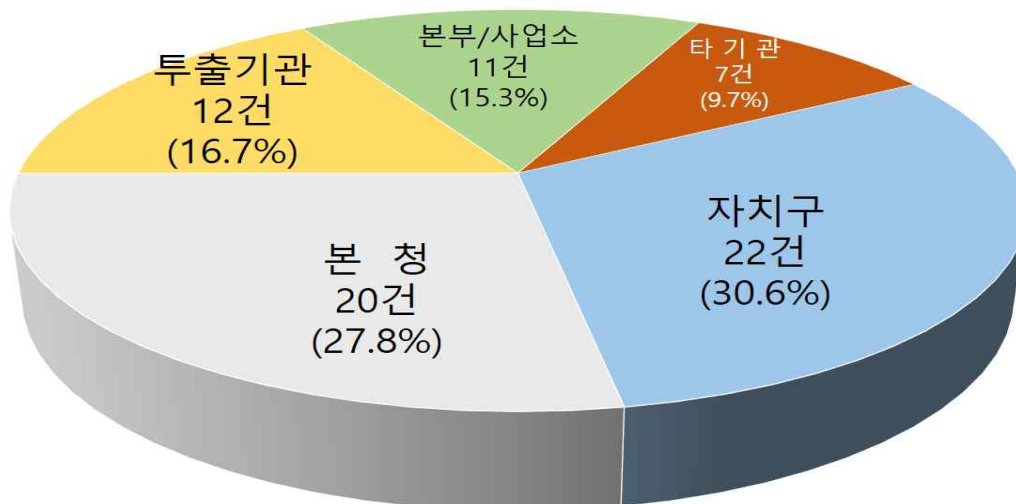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공익제보지원센터		국민권익위원회
		온 라 인 PC/모바일	오프라인 우편/방문/팩스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/이첩
접수건수	72 (100%)	57 (79.2%)	8 (11.1%)	7 (9.7%)

\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### 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22건(30.6%)으로 가장 많았음
  - 가정폭력방지법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1건
  - 자치구 직원 복무 등의 부패 신고 20건
  - 기타 일반민원 등 1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20건(27.8%), 본부/사업소 소관 11건(15.3%)
 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5건, 부패신고 8건, 일반민원 7건
 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부패신고 6건 일반민원 4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2건(16.7%), 타기관 7건(9.7%)
 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2건, 부패신고 9건, 일반민원 1건
  - 타기관 7건은 타 지자체 등 소관 제보



### 3. 공익제보 분류

#### 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72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57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57(79.2%)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72 (100%)	46 (63.9%)	11 (15.3%)	15 (20.8%)

\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#### 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<b>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</b> 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<b>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b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직무수행(직무수행 기본자세 등),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,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)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

## 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### □ 공익제보 해당 72건 세부내역

#### ○ 부패신고 해당 46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업 무 부 적 정	본 청	7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 부 / 사 업 소	5	
	투 자 출 연 기 관	8	
	자 치 구	18	
	타 기 관	-	
	소 계	38	
불 공 정 행 위	본 부 / 사 업 소	1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투 자 출 연 기 관	-	
	자 치 구	-	
	소 계	1	
복 무	본 청	1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 부 / 사 업 소	-	
	투 자 출 연 기 관	1	
	자 치 구	2	
	타 기 관	3	
	소 계	7	
총 계		46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## ○ 공익신고 해당 11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개인정보보호법	3	본 청 1 자치구 1 타 기관 1	진행중2, 신고안내1	공문상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불완전 등
여객자동차법	2	본 청 2	취하1, 진행중1	운송조합의 입찰비리 의혹 등
가정폭력방지법	1	투 출	진행중1	투출기관 직원 품위유지의무 위반
건설산업기본법	1	타 기 관	신고안내	타지역 공사현장 소음·먼지 피해
방 문 판 매 법	1	본 청	신고안내	전화권유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 의심
임대주택특별법	1	투 출	취하	임대주택 입주조건 위반
지 방 세 기 본 법	1	본 청	보완요구	기업의 지방세 탈루 의혹
청 원 경 찰 법	1	본부/사업소	진행중	공공안전관 복무위반
총 계	11			

\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\* 조례의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에 따라 세부내용은 나타내지 않음

## 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2.9.30.기준)

###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(4)		종결(25)				진행중	취하
	처분 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 (직접제보안내)	중복 등 (중기불충분, 보완요구 등)	중지 (수사중)		
72	2	2	6	6	13	-	30	13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###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연번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 패	건물 건축법 위반	자 치 구	건축물 시정조치
2	부 패	국립공원 내 법 위반 처분 지연	자 치 구	이행강제금 부과